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2월 23일 03시 15분



목차

목차	2
기타분야	3
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(여수시)	3
지원개요	3
대 상 자	3
세 목	3
내 용	3
접수처	3
신청절차	4
구비서류	4
서식	4

긴급민생지원 분야	소상공인 금융지원 분야	중소기업 금융지원 분야	기타분야
민생지원 Q&A			

- 기업세금납기연장지원(세관) ▪ 코로나19피해납세자 국세지원(세무서)
- **코로나19피해납세자 지방세지원(여수시)** ▪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착한임대인재산세감면(여수시) ▪ 고용보험3개월납부유예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산재보험3개월납부유예 6개월간30감면(국민건강보험공단)
- 코로나19관련 국민연금보험료3개월납부유예(국민연금공단) ▪ 코로나19고용유지 지원금특별지원(고용노동부)
- 코로나19긴급 고용안정지원금(고용노동부) ▪ 코로나19관련 소상공인 국유재산사용료인하
- 코로나19극복 영농지원 재난지원금(바우처)

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지원(여수시)

📌 지원개요

대상자

‘코로나19’ 확진자 및 격리자,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,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* 행정명령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·간접 피해자

- 집합금지: 유흥업소,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학원, 홀덤펍 등
- 영업제한: 식당, 카페, 이·미용업, PC방, 독서실, 스터디카페 등

세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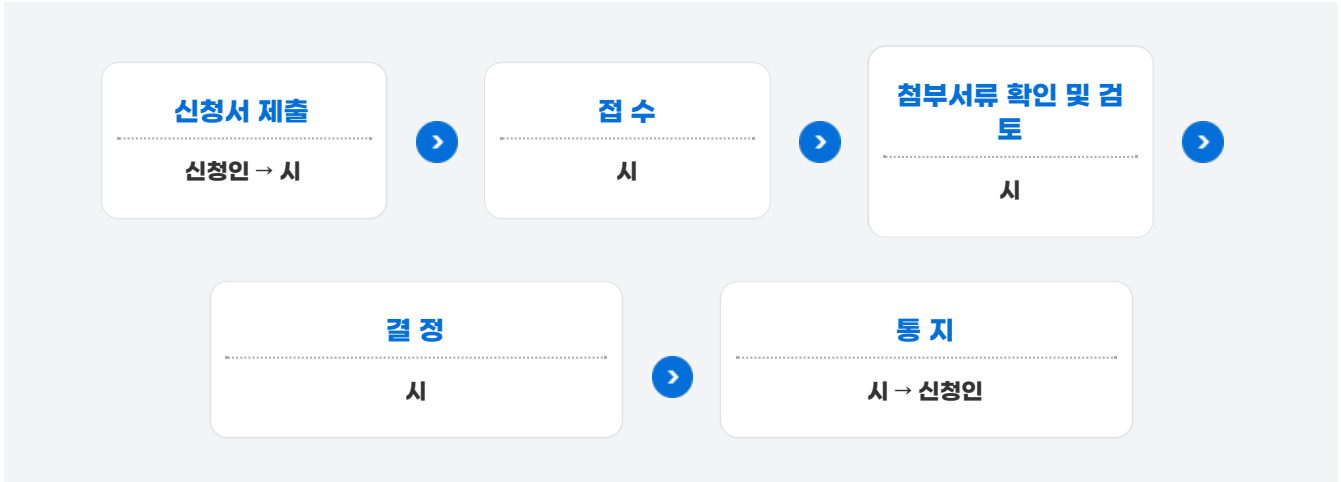
- 신고납부 세목: 취득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(사업소분)
- 정 기 분 세목: 재산세, 자동차세
- 세외수입분야: 각종 과징금, 변상금, 과태료 등

내용

- (기한연장) 지방세에 대한 신고·납부기한 등을 6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에서 연장
 - › ※ (효과) 무신고(20%)·납부불성실(1일 10만분의 25) 가산세 부과 할 수 없음
- (징수유예) 지방세의 고지유예·분할고지 징수유예·체납액에 대한 징수 유예를 6개월(최대 1년) 범위 내 유예
 - › ※ (효과) 징수유예 기간 중 가산금(3%), 증가산금(0.75%) 징수 및 체납처분(압류 등) 불가
- (세무조사 연기) 세무조사 대상 기업 중 피해 업체 조사 연기
- (지방세 감면)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(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)

접수처

신청절차



구비서류

구분	준비서류
공통	신청서,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(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)

서식

[별지 제1호서식] (분할납부, 납부기일의 연기, 징수유예등(분할납부·납부기일의 연기) 기간연장) 신청서 다운로드	 hwp다운로드
[별지 제1호서식] 지방세 기한연장 신청서 다운로드	 hwp다운로드
[별지 제7호서식] 체납처분 유예 신청서(지방행정제재) 다운로드	 hwp다운로드
[별지 제26호서식] (징수유예등, 체납처분유예)신청서 다운로드	 hwp다운로드
[별지 제41호서식]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다운로드	 hwp다운로드

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